

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

경상남도 | 복지정책과(☎055-211-4854)
함양군 | 사회복지과(☎055-960-4840)

코로나 19로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된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.

▶ 신청대상

- (위기사유)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
- (소득기준) 중위소득 75% (1인기준 1,370천원)
- (재산기준) 101백만원(당초) → 170백만원(완화)
- (금융재산) 500만원 이하(단, 주거급여 700만원 이하)
*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%(당초)→150%(완화)
- (적용시기) 2021. 1. 1. ~ 6. 30.

▶ 지원규모 : 152백만원

○ 생계지원금액 (원/월)

가구 구성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474,600	802,000	1,035,000	1,266,900	1,496,700	1,722,100

○ 주거지원금액 (원/월)

가구 구성원수	1~2인	3인~4인	5인~6인
지원금액	183,400	243,200	320,300

▶ 신청접수

- 신청기관 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
- 신청서류 : 긴급지원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통장사본 등

[관련법령]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및 제4조, 함양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제4조